모햇 제1차 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며, "모햇 제1차 협동조합"이라 한다.
- 제2조(목적) 모햇 제1차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 판매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ESS(Energy Storage System) 운영 사업, 기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반적인 활동(교육, 견학,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며 구성원 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홈페이지, 문자, SNS 등 조합원이 접하기 쉬운 매체를 활용한다.
 -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서면 통지하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 문자 등으로 통지하며,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 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 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시 참여한 조합원은 예외로 하며 기타조합의 사업, 기술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를 통해 가입을 허가할 수있다.
-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문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가입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모집 중일 경우는 모집 완료일 경과 후 2주내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제11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으로 한다.
 -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 ③ 개별 추진되는 사업별 출자 가능한 구좌수는 사업별 운영규약을 통해 그 한도를 제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 ④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사업별 운영규약을 통해 필요할 경우 분할 납을 허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 ⑥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 ① 사업별 운영규약을 통해 현물 출자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2조 (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1조 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 제13조(출자 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명칭
-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 3. 조합 가입 연월일
-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6. 발행 연월일
-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제14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제16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 된다.
 -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2. 사망한 경우
 -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본 조 2항의 2에 의한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은 상속재산이므로 탈퇴 조합원의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할 수 있다. 단, 이 또한 지분환급청구권은 제18 조 5항에 따른다.

- 제17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조합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본 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8조(탈퇴. 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 제16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17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 신청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제명되거나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 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탈퇴환급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4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제19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

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8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지분범위, 경비 및 적립금

제20조(지분의 범위) ①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설비에 투자된 출자금은 해당 설비의 감가상각비율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한다. 즉, 출자금 200만원이 A사업에 투자되고, A사업의 설비가 20년 정액감각상각을 할 경우 지분가치도 이에따라 감소하여, 사업개시 1년 후에는 출자금 190만원에 해당하는 지분가치, 2년 후는 180만원, ..., 20년 후에는 지분가치가 0원이 된다.

2. 조합원이 출자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 이익잉여금

해당 사업에 출자 참여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화된다.

(본 조 1항에서 명시한 대로 특정사업 설비에 투자된 출자금의 지분가치는 감가상각 비율에 따라 감소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에 후속 사업에 출자되어 출자금 전환되지 않은 금액은, 사업에 출자한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분화 된다. 1항의 예에서 설비에 출자된 출자금은 감소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계속 쌓이며 해당 조합원의 지분가치가 상승하거나, 타 사업에 재출자되며 출자금이 상승하며 조합원의 전체 지분가치는 유지될 수 있다)

3.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은 지위의 양도 또는 지분의 양도를 언제든 타인에게 할 수 있으며 그 조건 또한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2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3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4조에 따른 법정적립 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 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6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제28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3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휴대전화 메시지,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8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8. 조합원의 제명
-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총회는 제29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 제32조(합병. 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 3. 조합원의 제명
 -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제34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 이사회 의결을 통하거나 제38조 2항에 따라 운영회를 설치해서 정한다.

제37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제5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39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 제41조(임원의 정수)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제42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4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 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 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이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선전 벽보의 부착
- 2. 선거 공보의 배부
-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 한 지지 호소
-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9. 당선인의 확정
-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①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0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제51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 제52조(임원의 보수등)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4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 야 한다.
 -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은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그 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에 따라 공개한다.
-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 제56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재생에너지 생산 판매 사업(전력판매 포함)
 - 2. 태양광 발전사업
 - 3. ESS 운영 사업
 -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5.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6.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제57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7.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제5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9조(사업자금의 조달) ① 조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조합원 출자금과 금융조달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조합원 출자금은 기존 조합원 추가출자를 우선하고, 이후 신규 조합원을 모집키로 한다.

- ② 금융조달은 조합원 펀드(차입금)을 1순위로 하며, 신협 등 외부금융기관 대출을 2순위로 진행한다. 단, 조합원펀드의 설정금리는 외부금융기관 대출보다 1.0%~2.5% 높게 설정할 수 있다.
- ③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제7장 회계

제6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1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62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4조 및 제25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적립금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 제65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제66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 1. 총회의 의결
 -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 야 한다.
- 제67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제68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 ② 조합의 청산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관할 시에 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모햇 제1차 협동조합

